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92
----------	-------

발의연월일 : 2025. 9. 8.

발 의 자 : 이성윤 · 서삼석 · 문정복
이원택 · 박균택 · 윤준병
안호영 · 이건태 · 김승원
서영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을 통해 개선사업 대상을 6개 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4월 2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되어 양 법 사이의 대도시권 기준 불일치가 발생함.

이에 전주권과 같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가목 외 지역으로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지역에 포함하

여 양 법 간의 대도시권 범위를 일치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등).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선정 기준, 관리”를 “관리”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는 광역시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지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로로 한다.

1.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2.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3.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 공항,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원 등이 계획되지 아니한 도로

부 칙

이 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① ~ ④ (생략) <u><신설></u>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는 광역시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지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로로 한다.</u> <u>1.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와 연결하는 도로</u> <u>2.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u> <u>3.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 공항,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원 등이 계획되지 아니한 도로</u> <u>⑥ ----- 관</u> <u>리 -----</u> <u>-----</u> <u>---</u> <u>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u>
<u>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⑥·⑦ (생략)</u>	